

의안번호	제3069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3. 13.

#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6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13.
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조문의 일부개정 (2026. 1. 1.시행)
-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」를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,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조정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5682(2026. 2. 2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270호

가) 예고기간: 2026. 1. 30.~2026. 2. 19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100분의 50으로”를 “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”은 <u>100분의 50</u>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 <u>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</u>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<u>100분의 25</u>로 ---.</p>

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된 감면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재무과장 오 은 겸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(시행 2026. 1. 2.) 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)

제7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,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20. 1. 15., 2023. 3. 14., 2025. 12. 31.>

1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2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3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개발사업구역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(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)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4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